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맥쿼리 뉴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맥쿼리 뉴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맥쿼리 뉴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52822)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4.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macquarie.co.kr/mim](http://www.macquarie.co.kr/mi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작성 기준일 : 2015년 12월 17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12월 28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5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 및 모집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자는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미국인 경우(또는 1인 이상의 미국(법)인이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수동적비금융법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미국 정부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 ①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 ②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쉽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쉽은 제외합니다.
- ③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 ④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 ⑤ 미국인(위 제1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에 따른 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운용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게 됩니다.

**<모투자신탁[맥쿼리 뉴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운용전략 >**

- ① 시장의 방향성 보다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및 비즈니스 모델의 강점을 바탕으로 이익의 안정적 성장성이 돋보이는 저평가된 중소형주에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 ② 철저한 종목 리서치를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수익증가 및 해당 국가의 내수 확장에 따른 수혜를 받는 국내 기업에 투자합니다. 또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수혜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포착합니다.
  - 중국을 비롯한 해외 소비시장 및 차세대 신성장 시장확장에 따른 수혜기업에 투자
  - 중국 등 내수확장에 수혜를 보는 국내 기업의 경우 중국시장 진출 초기 단계의 기업에 투자
  -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이 기대되는 차세대 신성장 산업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 신성장 산업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KOSPI 구성 종목 중 섹터별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큰 대표 산업의 우수 기업에 투자
- ③ 국내 산업기반이 안정적인 기업을 선정하여 선제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상승 가능성이 있는 숨겨진 기업들을 폭넓게 발굴하여 다양한 종목에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합니다.
- ④ 전통적인 분석방식인 내재가치분석과 성장잠재력 분석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방식을 통해 초과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중소형주에 50% 이상 투자하는 운용전략에 따라 KOSPI와의 추적오차를 줄이기 위해 시장상황 및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대형주 등 KOSPI 대표 산업에 대한 일부 편입도 가능합니다.

※ 상기 투자 비율은 시장 변화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비교 지수(벤치마크) : KOSPI

비교지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변경 및 투자자에게 공시 될 예정입니다.

#### (2) 위험관리

##### ①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

투자대상자산을 법과 규정 등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중 투자하지 않고 분산 투자함으로써 리스크를 축소합니다.

##### ② 신용평가관리

당사의 기준 및 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 및 신용등급 이상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합니다.

###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수익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모자형 구조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맥쿼리 뉴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 (주식)	맥쿼리 연금우량채증권모투자신탁 (채권)
맥쿼리 뉴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모투자신탁 70% 이상 투자	-
맥쿼리 퇴직연금뉴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모투자신탁 70% 이상 투자	-
맥쿼리 중국내수수혜해형국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모투자신탁 30% 이하 투자	모투자신탁 50% 이상 투자

-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신탁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은 증권등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 및 어음의 가격은 이자율 등 여타 거시경제지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 등의 위험	주식, 채권 및 어음 등의 경우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의 회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집중투자 위험 및 시장과의 수익률 괴리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산의 50% 이상을 중소형주에 투자하며,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수익증가 및 해당 국가의 내수 확장에 따른 수혜주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과의 수익률 괴리가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신탁 운용전략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주식 시장대비 추적오차(Tracking Error)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 위험등급 기준이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지만 위험 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및 투자자유형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의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은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해 투자신탁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위험등급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비고
1등급	매우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최대 50%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맥쿼리투자신탁운용(주)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요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은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	----	------	--------------

	년도		운용중인 다른 펀드수	운용중인 다른 자산 규모(억원)	
고재욱	1977	차장	62	1,689	現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주식액티브1팀 하나증권 인사팀/투자분석팀 흥국투자신탁운용 주식운용1팀 연세대 경제학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없음]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13.12.11 ~14.12.10	12.12.11 ~13.12.10	11.12.11 ~12.12.10	10.12.11 ~11.12.10	09.12.11 ~10.12.10
맥쿼리 뉴그로스자1(주식)	6.90	11.53	20.48	6.80	26.59
비교지수	-2.40	1.84	4.40	-5.61	20.17
맥쿼리 뉴그로스자1(주식)A	5.43	10.00	19.50	6.80	26.59
비교지수	-2.40	1.84	4.40	-5.61	20.17
맥쿼리 뉴그로스자1(주식)Ae	5.80	-0.78			
비교지수	0.00	0.00			
맥쿼리 뉴그로스자1(주식)C1	4.70	9.24			
비교지수	0.00	0.00			
맥쿼리 뉴그로스자1(주식)C2	5.12				
비교지수	-2.40				
맥쿼리 뉴그로스자1(주식)Ce	5.64	10.22	33.58		
비교지수	0.00	0.00	0.00		
맥쿼리 뉴그로스자1(주식)Cw	6.16	-5.20			
비교지수	-2.40	7.61			
맥쿼리 뉴그로스자1(주식)S	-3.10				
비교지수	-4.61				

주 1) 비교지수 : 1 \* [KOSPI]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 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펀드명: 맥쿼리 뉴그로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협회코드52822)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협회코드
종류 A	2005-12-01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AA536
종류 A-e	2013-03-15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자	AA720

종류 C1	2012-06-22	투자자에 대한 자격제한 없음	AA537
종류 C2	2013-06-24	종류C1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AA538
종류 C3	2014-07-17	종류C2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AA539
종류 C4	미설정	종류C3 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한 수익자	AA540
종류 C-i	미설정	집합투자기구 및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내지 제16호, 동 조 제3항 제3호, 제10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100억 이상을 매입하는 개인, 500억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	AA542
종류 C-e	2012-05-15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자	AA541
종류 C-w	2013-04-19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및 특정금전신탁	AH934
종류S	2014-04-23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AQ029
종류S-i	미설정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AW903
종류 C-p	미설정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자	B7087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S	종류 S-i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종류 C-p		
선취판매 수수료	납입금 액의 1.0% 이내	납입금 액의 0.5% 이내												매입 시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금 액의 0.15% 이내											환매 시
환매수수료														

주1)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시 부과 됩니다.

2) (선취·후취)판매수수료는 상기의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A-e	종류 S	종류 S-i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i	종류 C-e	종류 C-w	종류 C-p	
집합투자 업자보수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0.650	매 3 개 월 후 급
판매회사 보수	0.700	0.350	0.350	0.030	1.400	1.000	0.850	0.750	0.050	0.500	0.000	0.900	
신탁업자 보수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 관리보수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0.017	
기타비용	0.002 4	0.001 6	0.002 2	-	0.002 3	0.002 0	0.000 2	0.002 1	0.002 1	0.002 1	0.002 0	-	-
총보수 및 비용	1.399 4	1.048 6	1.049 2	0.727 0	2.099 3	1.699 0	1.547 2	1.449 1	0.749 1	1.199 1	0.699 0	1.597	
합성 총보수· 비용 (모투자신 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1.399 4	1.048 6	1.049 2	0.727 0	2.099 3	1.699 0	1.547 2	1.451 8	0.751 8	1.199 1	0.699 0	1.597	
증권 거래비용	0.526 9	0.483 1	0.415 7	-	0.521 8	0.525 0	0.450 2	0.712 6	0.712 6	0.526 9	0.529 2	-	

주1) 기타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설정인 종류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3.12.01 ~ 2014.11.30]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설정인 종류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3.12.01 ~ 2014.11.30]

모자형투자신탁의 경우 증권거래비용은 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증권거래비용에 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 A 수익증권	246	556	888	1,826
종류 A-e 수익증권	160	393	645	1,365
종류 C1 수익증권	220	576	916	1,876
종류 C-i 수익증권	78	246	429	957

종류 C-e 수익증권	125	392	678	1,493
종류 C-w 수익증권	73	229	399	892
종류 S 수익증권	110	343	595	1,316
종류 S-i 수익증권	76	238	415	926
종류 C-p 수익증권	167	519	896	1,951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종류S 수익증권은 수익증권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음)

## 2. 과 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4) 장기주식형 펀드의 세제지원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

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가)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 ①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 ②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나)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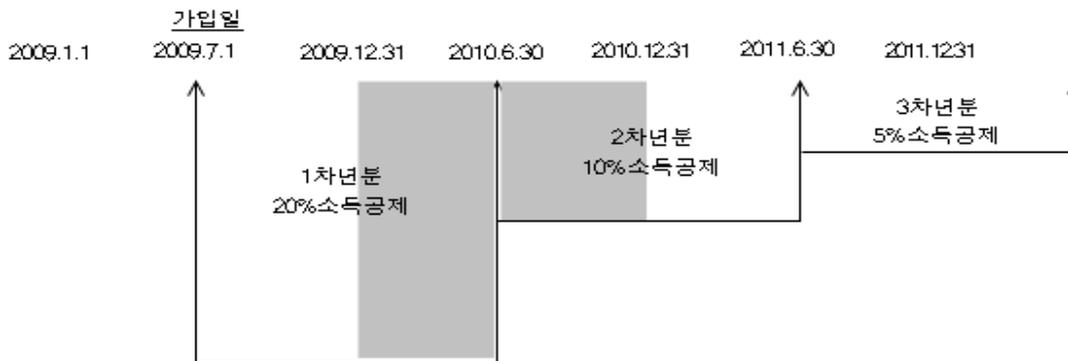
(라) 소득공제 비율

- ①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②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③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마)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 ①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 ②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Rightarrow$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바)계약 관련 유의사항

투자기간을 3년 이상으로 계약하더라도 3년째 이후는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3년 이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 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에서 12% 세액공제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연금수령시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수령시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 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해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macquarie.co.kr/mim">www.macquarie.co.kr/mim</a>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 (2) 매입 및 환매 절차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나) 1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

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가)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15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다) 환매대금은 관련세금 등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라)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두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III 요약 재무제표**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 2014.11.30 )	( 2013.11.30 )	( 2012.11.30 )
운용자산	24,590,915,224	39,113,697,729	6,645,034,518
증권	24,542,369,475	39,103,080,397	6,615,120,743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8,545,749	10,617,332	29,913,77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5,352,408	488,665,197	23,291
자산총계	24,606,267,632	39,602,362,926	6,645,057,809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5,171,977	485,837,656	723,759
부채총계	15,171,977	485,837,656	723,759
원본	23,195,071,919	35,200,604,173	5,282,010,742
수익조정금	-671,646,755	2,578,704,212	1,045,323,375
이익잉여금	2,067,670,491	1,337,216,885	316,999,933
자본총계	24,591,095,655	39,116,525,270	6,644,334,050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 목	제 9 기	제 8 기	제 7 기
	( 2013.12.01 - 2014.11.30 )	( 2012.12.01 - 2013.11.30 )	( 2011.12.01 - 2012.11.30 )

운용수익	2,065,716,390	1,338,987,914	324,791,050
이자수익	18,064,948	12,475,717	1,328,525
배당수익	0	0	12,332,430
매매/평가차익(손)	2,047,651,442	1,326,512,197	311,130,095
기타수익	1,954,101	471,372	4,614
운용비용	0	0	6,988,928
관련회사 보수	0	0	6,988,928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2,242,401	806,803
당기순이익	2,067,670,491	1,337,216,885	316,999,933
매매회전율	0.00	0.00	101.22

주1) 요약재무정보의 항목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